

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 토 보 고 서

1. 재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함.

2. 지출내역

○ 총 괄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지출결정액	지출액	예산잔액
일반회계	3,632,927	209,971	209,963	3,422,964

○ 사업별 지출내역

사 업 명	지 출 결정액	지출액	불용액	지출일자
계	209,971	209,963	8	
방재물자구입	11,859	11,859	8	2001. 3. 31
직원성과상여금	146,527	146,527		2001. 3. 9
사하초교~한우 아파트간 도로개설	39,412	39,412		2001. 4. 27
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경비	12,173	12,173		2001. 10. 18

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제120조 제2항

4. 검토의견

-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997만원으로서 공무원 포상금인 성과상여금 지급외 3건에 2억 996만 2,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,230원이 발생하였으며, 사업내역으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1억 4,653만원, 방제물자구입비 1,186만원, 사하초등교~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보상비 3,941만원,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경비 1,2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.

- 세부적인 지급내용은

동절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방제물자 구입을 위하여 1,186만원을 지출하였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1,217만원을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으며, 사하초등교~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보상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한 추가 보상사유 발생으로 3,941만원 지출되었으며, 2001년도 예비비지출 전체 예산중 70%인 1억 4,653만원이 신설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지출되었으나, 이는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시 소요금액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액 계상치 않고 일부 잔여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예비비 지출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.

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 두 천